

#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2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수수료 및 실비의 면제 대상자 규정 신설 (안 제9조의2)
  -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위기청소년 등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- 보험가입 의무자를 한정함(안 제10조)
  - 수탁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 의무자를 시장으로 한정함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12. 20. ~ 2018. 1. 9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## < 불임 1 >

#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를 “상담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상담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
2.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수수료 등의 면제)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
5. 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6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,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, 청소년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

제10조 중 “시장 또는 수탁자는” 을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 김태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팀장 박순덕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민서 (행정 2219)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운영의 위탁 및 지원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</u>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」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운영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, 긴급 구조 등 <u>지원센터</u>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제9조(수수료 등의 징수)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,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,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, 국민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가구 및 저 소득 모·부자기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2.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</li> </ol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운영의 위탁 및 지원) ① .....  ..... <u>상담복지센터</u>.....  .....  .....  .....  ....</p> <p>제8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.....  .....  ..... <u>상담복지센터</u>.....  .....  .....  .....</p> <p>제9조(수수료 등의 징수) ① <u>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</u>  <u>1.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</u>  <u>2.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</u> 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</p> <p>2.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

현 行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0조(보험가입)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,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의 2(수수료 등의 면제)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li> <li>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</li> <li>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5. 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</li> <li>6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 청소년, 간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,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</li> </ol>
	<p>제10조(보험 가입) 시장은 .....  .....  .....</p>